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 11. 26 선고 2021가합15997 판결 [주식매매대금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범

피고 1. 주식회사 C

2. 주식회사 D

변론 종결 2021. 11. 5.

판결 선고 2021. 11. 26.

주 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은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부터 2021. 7.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주식회사 D은 48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부터 2021. 9.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B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은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부터 2021. 7.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주식회사 D은 223,4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부터 2021. 9.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화학약품 제조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원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의 대주주로 피고 D를 공동으로 경영하였는데, 2019. 10. 18.경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D에 관한 '주식 및 회사 경영권 양도·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양도할 경영권)

원고들은 피고 C에게 피고 D의 경영권 일체를 양도한다.

제3조(양도금액 및 지급방법)

① 피고 C은 원고 A, 원고 B에게 각각 300,000,000원, 200,000,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500,000,000원이 총 양도금액이다.

② 피고 C은 계약금으로 총 양도금액의 10%인 50,000,000원과 1차 중도금으로

100,000,000원을 이 사건 계약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④ 총 양도금액에서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제외한 잔여금액(잔금)은 7회 분할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1차 지급일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
2차 지급일	1차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
3차 지급일	2차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
4차 지급일	3차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
5차 지급일	4차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
6차 지급일	5차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
7차 지급일	6차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

(3) 피고 C은 2019. 11. 1.경 원고들에게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원고 A에게 90,000,000원, 원고 B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20. 2. 7.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을, 2020. 3. 2.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을 각각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 분할 지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위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4항은 피고 C이 총 양도금액 중 잔금을 7회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차회 지급일을 '그 직전 지급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의 형식으로 정하여 해당 분할 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차회 지급일을 상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는 피고 C이 분할 지급금을 제대로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해석되는 점, 피고 C이 2020. 3. 2. 지급한 금원은 2차 지급금으로 보이는 점, 피고 C은 그 후 분할 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그 상실의 범위는 각 분할 지급금 액수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이상 잔금 중 미지급

전액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C의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잔금 지급의무는 2차 지급일로부터 30일임이 역수상 명백한 2020. 4. 1.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 A에게 160,000,000원(= 총 양도금액 중 원고 A 부분 300,000,000원 - 기지급금 합계 14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0원(= 총 양도금액 중 원고 B 부분 200,000,000원 - 기지급금 합계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20. 4.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1. 7.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각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위 피고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성균

판사최유빈

판사전제균

별지

1) 피고 D의 상호가 기재된 2021. 10. 26.자 답변서가 우편 제출되었으나, 이는 무변론판결 선고기일 통지를 받은 피고 C이 형식적인 내용만을 기재하여 제출한 답변서상 피고 C의 상호에 이어서 위 피고의 상호가 추가로 기재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들의 본점 소재지, 대표이사가 전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 또는 위 피고의 적법한 위임을 받아 작성·제출된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어(특히 피고들 상호 옆에 날인된 인영은 주식회사 상호조차 드러나지 않는

육안으로 보더라도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피고 D이 작성·제출한 답변서라고 할 수 없으며, 위 답변서에 위 피고의 주소 기재도 없는데다가 위 피고 대표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아 '송달받은 사람의 주소가 판명되거나 그가 출석한 때'로서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